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10호

「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8일

## 강릉시의회의장

###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,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규정 (안 제2조)
- 나. 강릉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지원내용의 규정 (안 제4조)
- 라. 준용 규정 (안 제5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, 강릉시의회
- 전화번호: 033-640-4077
- 팩스번호: 033-640-4070
- 전자우편(이메일): hellen8762@korea.kr

붙임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##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업인”이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임업후계자”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독립가”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임업관계자”란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립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5. “산림관련단체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
가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

나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

다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회, 조합의 지역 지회

6. “임업인 등”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

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,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내용)**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
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 지원사업
2. 임산물 직거래·소비·홍보사업
3.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
4. 신기술 확산,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단체의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
2.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
3.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